



『희망마차』 사업 업무협약서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마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희망마차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및 활동) 이마트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1. 주식회사 이마트는 서울 시내 각 지점들과 연계하여 희망마차사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및 후원기금(11개월 4억 2천만원)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한다.
2. 서울특별시는 희망마차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25개 자치구 및 희망온돌사업 거점기관 등과 연계하여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희망마차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3조 (세부시행) 이 협약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이마트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서에 따른다.

제4조(협약의 효력기간)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2012년 협약체결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시 이마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갱신 할 수 있으며, 이마트는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협약 갱신 의사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마트와 서울특별시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이의제기(통보)를 하지 않으면 협약기간은 다음 연도로 자동 연장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

2012년 4월 17일

주식회사 이마트
대표이사 최 병 렬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황 용 규

최 병 렬

박 원 순

황 용 규